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대표 분양상담전화(1544-7780)를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의 많은 상담전화 연결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의 경우 상담자께서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실 경우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등·초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청약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5.05.14) 기준입니다.
- 본 건축물의 건설지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은 「주택법」 제63조제1항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같은 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 지역으로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의거한 거주자 우선 분양 물량은 배정하지 않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동구 건축주택과 -21170(2025.05.12.) 분양신고 수리
- 본 건축물은 대구광역시 2022-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승인-(2022.04.05.)를 통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11-4번지 일원
- 공급대상물(금번 분양신고는 오피스텔만 해당)
 - 대지면적 : 9,283.10㎡ 중 오피스텔 지분 900.34㎡
 - 건축물 연면적 : 109,387.88㎡ (아파트, 오피스텔, 판매시설을 포함한 전체면적 중 오피스텔 10,609.66㎡)
 - 건축물 총별 용도

구 분	용도
지하 5층 ~ 지하 2층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지하 1층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센터, 생활지원센터
지상 1층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센터
지상 2층 ~ 지상 29층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 5층 ~ 지상 29층 1개동 오피스텔 56실
- 주차대수 : 총 836대 중 오피스텔 81대

- 내진설계 등급 : 최대지반가속도 0.234g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의 Ⅵ에 해당함.
- 입주예정일 : 2026년 04월 중(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 중심상업지역 / 비행안전 6구역 / 방화지구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설정여부 : 해당없음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 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 대구동구북합개발1호(주)와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간의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시공사 : ㈜대우건설
 - 분양대행사 : ㈜한아름

공급대상

(단위: ㎡, 호실)

타 입	호실(수)	동 라인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계			
840A	56	201	84.8344	33.4873	118.3217	71.1363	189.4580	16.0781

- 상기 타입별 표기는 동별 공용면적의 차이에 따른 구분이며, 전용면적은 동일합니다.
- 상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법정 표시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방법 : 면적(㎡) × 0.3025 또는 면적(㎡) ÷ 3.3058)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원, VAT포함)

타입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동 라인	공급 호실	층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체결시	14일 이내	1회(30%)	2회(30%)	입주시
										25.09.15	25.12.15	
840A	201동 1호,2호	2	2층	152,203,200	329,088,000	32,908,800	514,200,000	5,000,000	20,710,000	154,260,000	154,260,000	179,970,000
		2	3층	153,772,000	332,480,000	33,248,000	519,500,000	5,000,000	20,975,000	155,850,000	155,850,000	181,825,000
		2	4층	155,370,400	335,936,000	33,593,600	524,900,000	5,000,000	21,245,000	157,470,000	157,470,000	183,715,000
		10	5~9층	156,939,200	339,328,000	33,932,800	530,200,000	5,000,000	21,510,000	159,060,000	159,060,000	185,570,000
		20	10층~19층	158,537,600	342,784,000	34,278,400	535,600,000	5,000,000	21,780,000	160,680,000	160,680,000	187,460,000
		20	20층이상	160,106,400	346,176,000	34,617,600	540,900,000	5,000,000	22,045,000	162,270,000	162,270,000	189,315,000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타입, 향,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각 실별로 계약면적에 포함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및 관리실(MDF, 방재실 등)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실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보행공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의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 매입비는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분양 및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홍보 제작물 및 분양광고의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분양사업장 1544-7780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5.05.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은 1인당 각 1실(건)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300실 미만으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 의거 인터넷 청약의 의무가 없으며, 벤처밸리 푸르지오 견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8번지)에서 방문 청약이 원칙이며 인터넷을 활용한 청약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본 업무시설(오피스텔) 각 호별 청약신청금은 일백만원(₩1,000,000)입니다.
- 업무시설(오피스텔) 당첨자 및 낙첨자의 청약신청금은 전액 환불됩니다. 단 청약신청금 환불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 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

■ 청약일정 및 장소

구 분	청약신청	추첨일시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당첨자 동·호수 배정방법
일 시	2025년 5월 19일(월) 10:00~17:00	2025년 5월 20일(화) 11:00	2025년 5월 20일(화) 13:00	2025년 5월 20일(화) 13:00~15:00	※ 공개추첨에 의해 당첨된 당첨자의 동호수를 유니피커(https://www.unipicker.com) 프로그램으로 무작위 배정합니다. ※ 별도의 예비당첨자는 선정하지 않음.
방 법	방문청약	공개추첨	당사 견본주택 내 게시	방문계약	
장 소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8번지)				

■ 청약신청 및 청약 신청금 납부방법

구분	청약방법	청약신청금
	방문청약(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 견본주택)	모든 타입 공통 일백만원(₩1,000,000)

※ 본 오피스텔 청약은 벤처밸리 푸르지오 견본주택에서만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 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관계자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당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5.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간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건본주택 내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 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년 5월 20일(화) 13:00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 건본주택(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8번지)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대상	• 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 및 과입금 된 청약신청금 환불 시, 이에 대한 경과이자 는 지급하지 않음.
- 호별 청약신청금 일백만원(W1,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은 청약 신청 환불계좌로 등록된 본인(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 시 상기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반드시 입금확인증을 지참하시기 바람.
- 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분양사무소, 시공사 및 제3자에게 현금을 직접 입금 또는 지급하는 방법으로 청약금을 납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음.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계약 체결 시)
2025년 5월 20일(화)	13:00~15:00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 분양사업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8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분양자들에게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1차 계약금	부산은행	101-2080-7996-08	대한토지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첨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동호별 가상계좌 생성(공급계약서 명시)		

- 상기 1차 계약금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세대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
- 실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해 입금된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상기 모계좌로 집금됩니다.
-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1차 계약금 납부계좌는 PLUS옵션 계좌와 상이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부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분양사업장에서 일체의 현금 및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1호에 따라 계약금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첨자는 반드시 계약체결 시간 만료 이전에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아래 구비서류 참조)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 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 및 공급(분양)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치 않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공통기본서류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분양사업장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본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1/2씩 균등 분할 납부 ※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에 따른 인지세는 사업주체(시공사)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 ※ 오피스텔 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에 따른 인지세 별도 납부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는 우체국, 은행에 방문,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에 접속, 구매 및 출력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계약서 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 : 35만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본인발급용)
	인감도장	본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구분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발급
법인 계약 시	대표이사 신분증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법인 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제3자 대리인 제출 시 추가사항 ※본인 이외는 모두 3자	위임장	청약자	분양사업장에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계약자 본인 발급용)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5.05.14.)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부동산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전 반드시 본 분양광고문 하단 “기타 유의사항”의 단지 내외부 및 설계 등의 유의사항을 확인 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개발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당첨 타입, 층, 호실의 공급금액 및 공급금액별 납부일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지연이자는 공급(분양)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급(분양)계약서 참조]
- 당 사업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의 의무가 있으며 공급계약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제반 서류를 사업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행사)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며,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도급 증서 : 계약서 1통마다 납부)에 대한 인지세는 사업주체(시공사)와 계약자가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당해 계약서별로 계약당사자간에 서명 날인을 마친 때(전매 포함 분양계약 체결 시)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과세기준(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입니다.
- ※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에 의한 '도급증서'(계약서 1통마다 납부)로서 과세대상이며 계약 체결 시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인지세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대상증서	1. 오피스텔 공급계약서 및 전매계약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2.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 도급 증서 ※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와 도급 증서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2023.01.01. 시행된 「인지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방법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및 결제 → 출력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2. 우체국 및 은행에 방문,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하여 과세문서(공급계약서 등)에 첨부
납부금액	계약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오피스텔 공급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중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의 미납, 과소 납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오니 공급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고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 및 이메일 주소(전자 세금계산서 수령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이유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확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추후 관리주체 등에 의해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관리비 및 부대시설 운영비, 기타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으로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시 무이자조건으로 융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무이자기간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관계자가 지정하는 최초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입니다. (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로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미납 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대출 제한 등) 및 금융권 사정, 법률의 변경 등에 따라 대출은행을 선정하지 못하거나 계약자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이 제한 또는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안내는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이며 사업주체가 알선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은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당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관계자 및 시공자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므로 납기일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미납 시 공급(분양)계약서에 표기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중도금 대출 혹은 본인 자금 조달 시에는 별도의 이자지원 적용 불가합니다.
-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법인은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방침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IV 무상제공 품목 내역 및 유상제공 품목

■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이며 판매일정은 추후 수분양자에게 별도로 공지하고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는 오피스텔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판매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무상제공 품목

무상 제공 품목	적용 주택형(타입)
시스템 에어컨 1개소	전타입
대형 아트월 타일(600*1200)	전타입
주방 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전타입

2. 유상제공 품목

1) 라이프업 수납 옵션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품목	옵션형(유상)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전타입	침실3 불박이장	침실3 불박이장	970,000	97,000	873,000

2) 라이프업 키친 옵션

(단위 : 원,VAT포함)

주택형	품목	제조사	선택(안)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전타입	전기국탐	쿠첸	인덕션 3구	CEN-IF3A0NBA	650,000	65,000	585,000
	오브제컬렉션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LG전자	상부냉장고 + 하부냉동고+ 김치냉장고	BC4S1AA1/BC3K1AA1	5,200,000	520,000	4,680,000

- 국탐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국탐이 설치됩니다.(RBR-S3410BSJ / 린나이코리아)
- 전기국탐 옵션 선택시에는 주방 상판에 가스배관용 원형 타공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3) 시스템에어컨(유상)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선택(안)		설치 위치	제조사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시
전타입	1안	2대	거실 + 침실1	LG전자	1,000,000	100,000	900,000
	2안	4대	거실 + 침실1 + 침실2 + 침실3		2,800,000	280,000	2,520,000

- 시스템에어컨은 건본주택 설치제품(판넬 등)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될 예정입니다.(제품의 단종 또는 제조사의 도산 등은 제외)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감지기 위치, 조명기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으로 제어하며, 실내기 1대당 무선리모콘 1개가 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유무에 상관없이 기본으로 천정형 냉매배관이 각동 전세대(4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LG전자 장비 기준으로 배관시공)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실내기 1대와 실외기 1대(싱글형)가 설치되며, 입주 이후 실내기 추가가 불가합니다.

■ 유상옵션 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부산은행	101-2091-8504-01	대한토지신탁㈜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01동 1001호” 당점자 홍길동” → 101-1001홍길동)
잔금		동호별 가상계좌 생성 (공급계약서 명시)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잔금은 계약체결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계약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분양광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비용은 오피스텔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제반자재, 공사관리비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에 관한 상세내용 중 본 분양광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가격에는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추가선택품목 계약시 계약 가능기간 안내)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 및 모델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 단종 (제품의 품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발생시 동제조사의 동급이상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시 동급 이상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 및 제품에 대한 하자는 오피스텔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내용에 대한 민원, 제품에 대한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오피스텔의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구성내용 및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분양광고문 표기에 한계가 있고, 분양사업장 견련호실에 전품목 전시불가 등의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체결 시 분양사업장에서 상세한 설명과 확인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미선택시에는 기본 설계안 대로 시공됩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받이, 커튼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설치위치와 수량, 형태가 홈페이지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마감자재(엔지니어드스톤 등)에 의한 나누기, 상세도 변경으로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통신수구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류), 스마트스위치, 기타 기기 등의 설치위치, 수량,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분양광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시 분양광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옵션 선택으로 인해 시공되지 않는 기본마감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든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사용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에너지효율등급은 동일한 제품일지라도 등급산정 기준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으며 계약 전 위치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종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이 제공되는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유무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형태 및 사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자재 발주, 시공 개시 등 비용 발생 이후부터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시공상의 일정 등으로 비용 발생 시점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당사 분양 홈페이지 또는 분양사업장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제품 특성상 소음, 진동 및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전류의 온/오프라인 판매가는 계약시점과 입주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스위치의 설치 위치에 따라 스마트스위치의 기능 및 형태가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

기타 계약자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10의 2항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방문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6년 04월 중(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시행수탁자”, “시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위탁자 대구동구북합개발1(호주), 시공사 ㈜대우건설,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이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실질적 사업주체인 위탁자의 사업비 조달, 시공사의 책임준공,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를 통해 진행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입니다.
- 공급계약상 공급금액(분양대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급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본건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수탁자는 공급 대상 목적물인 신탁재산을 보전하고, 준공 후 공급금액 완납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수탁자가 공급계약상 공급자로서 부담하는 모든 의무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상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범위로 그 책임이 한정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탁자가 그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건 공급계약상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사용검사 전 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공사가 부담하며, 매수인은 수탁자에게 하자보수 또는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신탁해지, 신탁목적 달성 등의 사유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즉시 모든 공급계약에 대하여, 개별 공급계약에 따라 공급 대상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 경우에는 그 즉시 해당 공급계약에 대하여, 공급자이자 매도인으로서 대한토지신탁(주)이 가지는 일체의 권리·의무(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이전(승계)됩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상환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건 공급 대상 목적물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공급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매수인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매수인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그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상·안전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VI 단지역건 및 유의사항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 본 오피스텔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분		내용
공통	일반사항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사업장 및 사업부지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복리시설, 조경 등의 추가 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분양광고 및 공급계약서와 기타 홍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판정 기준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일부 실은 공사품질관리를 위하여 선행시공 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복리시설과 오피스텔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토지입니다. • 단지명 ‘벤처밸리 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허가	• 각종 홍보물은 2025년 04월 사업계획 변경승인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 • 홍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유보지 등)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초 건축허가 승인일인 2022년 04월 05일 기준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 • 현장여건 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지 및 도로 단지주변현황	• 북측 6M도로, 동,서,남측 23M도로에 인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 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부지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투시형 펜스 (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의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반시설의 위치, 도로, 하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및 송전탑 등 혐오시설 유무, 주변 개발현황 등 단지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물 및 모형과는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일조 및 조망과 관련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귀책사유는 없습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 • 본 사업장이 인접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녹지, 학교 등)은 개발계획 및 해당 기반시설 공사(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의 지연 및 변경 등에 따라

구분		내용
		사업추진 중 일부(당 사업의 실착공 및 준공 지연 등)가 변경,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 사업장의 입주시기 및 사용검사 완료가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등 단지의 대지경계선 밖에 위치하는 시설은 당사업지 부지가 아니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생배치 가능여부 - 유치원생은 2권역 내 분산배치 가능 - 초등학교는 효신초 배치 가능. 다만, 원활한 학생배치를 위해 시행위탁자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학교시설 무상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시설 무상공급을 위해 시행위탁자의 책임으로 효신초 교실(교실 2실 및 부대시설) 증축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학교시설 무상공급의 시기에 따라 학생배치 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생은 3학교군 내 분산 배치가능하며, 고등학교는 단일학교군(광역배정) 및 일반학교군(1학교군) 내 분산 배치 가능합니다.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초등(중)학교 : 대구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www.dge.go.kr/dgdb)] 문의 - 고등학교 :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dge.go.kr/)] 문의
단지	동별 현황	- 저층 실은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사생활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소음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며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보행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급배기용 D.A가 설치되어 소음이나 진동, 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인접동 및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실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이사만 가능하며, 개별적인 부피에 따른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이동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계단실 및 복도 내 창호는 일부는 고정창, 일부는 프로젝트창으로 적용되며, 프로젝트창의 적용위치는 층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관리사무소는 지하1층에 설치됩니다. - 각 층 공용 발코니는 엘리베이터 연돌 효과 및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하수도,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은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 단지 내 도로(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 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자전거 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실은 소음, 불빛, 분진 등에 의한 생활권과 사생활 침해 등 각종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 옥탑층 및 상층부 입면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집광판, 이동통신 중계기, 피뢰침 및 축뢰 피뢰침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장재 마감 사양 및 적용 비율은 비구조요소 내진설계 및 상품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차장 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마감, 수량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냄새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공간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준공 후 조경유지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 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분		내용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위치 : 옥외안테나 : 102동 옥상외부, 중계장치 : 101동, 103동 지하2층 헬름 / 각 동 EPS,TPS실 / 102동 옥상 외부 16층 이상층 세대 현관 천장 내부에는 긴급 비상 피난용 통신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일부 단지 내 도로는 비상상황에서 소방차량 등의 활동을 위해 설치된 도로로써 경사도로 인해 일반차량이 이용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보행자 이용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시 확정됩니다.
	외관계획	- 외벽에 입면 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으며, 일부 실의 외벽 및 외부공간, 지붕 등에 장식용 구조물 및 부착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경관조명, 사인계획 등), 공용부 디자인(E/V홀, 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외부E/V, 외부계단, 쉼터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및 재료, 울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저층부는 석재 및 금속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율은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문주는 진입공간 배치 현황 및 현장 여건에 맞춰 형태, 크기, 배치가 결정되며 문주 설치로 인해 주 진입부에 위치한 일부 저층 실에서는 조망간섭 및 일조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문주에 설치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사 및 당사의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에 적용된 외관특화, 입면, 색채, 경관조명 및 마감재 등 디자인 일체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 발생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 사인 등이 설치되어 일부 실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으로 인하여 인접 실은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유리 및 금속 마감재, 물딩이 설치되는 구간이 있으며, 면적은 동별로 상이합니다. 동 위치에 따라 일부동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사양 및 개소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적용된 대형옥상구조물 등 경관조명이 결함된 외관 요소는 발주처 및 인허가청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의 요청에 의해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BI 및 단지명은 시공사 및 시행사 협의에 의해서 형태 및 위치를 결정하며, 계약자 요구에 의해서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냉각, D.A 등 그릴 및 루버가 설치되는 부분의 재질, 색상, 간격 및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옥상구조물 상부 및 내부면은 도장시공을 하지 않습니다.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실은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공용시설이 인접한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실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단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영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후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때까지 커뮤니티시설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 실에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동선/성능 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제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변경, 마감재(동등 제품 이상)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내·외부 디자인과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창호사양 및 규격은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평면계획은 인테리어 특화디자인 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내 바닥레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에 공용 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 단지내에 쓰레기 야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 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호실설계		- 주인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오피스텔 PIT)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입주관리업무를 진행하며, 입주 후 약 24개월까지 AS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라 설치되어 운영됩니다. 각 운영기간은 단지 사정에 따라 단축 및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도 및 전기요금 등은 관리비로 부과됩니다. - 커뮤니티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커뮤니티시설 운영 홍보내용을 통해 관리주체가 사전 고지한 시설운영 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실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요금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총당금 등 제반 운영비용을 포함하며, 관리수입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 외부공간 일부에 하부 실의 원활한 배수 성능 확보를 위한 통기배관 및 우수입상관등이 노출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크기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에 주민 편의를 위해 세탁물 수거, 배송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개별사용료, 공용 전기요금 외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으며 제반 관리 비용등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 예정이나, 추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구성 후 입주자에 의해 세부사항이 결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용설비 및 시스템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요금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제습을 위한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지상1층, 지하층 E/V홀에 설치되는 공기정정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조건에 의해 지하저수조와 우수조(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에는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 -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실은 가로등(보안등) 및 경관조명에 의한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외부계단, 외부 E/V실, 제연휀룸, D.A)과 인접한 저층실은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기계 설비 장치가 설치되는 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함은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네트워크를 통한 화상통화는 불가합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 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81대 계획되어 있으며, 전기차 충전 시스템(급속 1대, 충전콘센트 4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의 주차면 계획과 일반형, 확장형, 장애인, 경형, 전기차 주차구획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건변화 및 주택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동 직하부와 기계실, 휀룸, 및 이와 유사한 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에 인접한 주차구획은 기동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SRC구조로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PI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지하1층에 반영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 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의 일부 구간은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의 간섭으로 통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은 인·허가 도서에 준해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택배 보관함은 지하 1층에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1층 주차장의 택배차 진입구간은 유효높이 2.7m 이상 확보되어 있습니다. - 단지내 오피스텔(지하), 근린생활시설(지하)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지하 1층 내 차단기를 설치하여 주차구획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오피스텔과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실은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호실설계	평면	- 타입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단위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해당 단위실은 보상등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단위실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샷시

구분		내용
		및 유리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실 내 단위실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위치 및 가구/선반의 배치, 주방 싱크대 수전위치, 현관문 도어의 방향은 좌우 단위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향식피난구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손상 및 보관된 물품이 훼손될 수 있으며 마감손상 및 훼손된 물품에 대해 보상등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욕실, 세탁실, 팬트리내부, 하향식피난구 등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시 도면 및 분양사업장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단위실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단위실 간벽 등 단열설치 부위의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타입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및 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타입의 경우, 욕실 뒷선반의 깊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실 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팬코일유닛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본 단지 실의 천장 높이는 2,300mm로 시공됩니다. (욕실, 세탁실, 팬트리 내부, 하향식 피난구 등 제외) • 입주 시 실 내에 침실별 가구(불박이장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각 실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은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다용도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됩니다. (욕조, 샤워부스 등에는 바닥난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 내부 벽체는 마감 품질 확보를 위하여 재료(콘크리트, 조적, 경량벽체, ALC블럭), 길이 및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간 벽체에는 공사를 위한 작업통로가 설치될 수 있으며, 작업 완료 후 조적, ALC블럭 또는 건식벽체로 마감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과 설계 도면이 상이한 경우 분양사업장이 우선됩니다.
	창호	• 저층 실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문틀 및 문짝의 폭, 높이,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밀폐된 생활 환경 속에서 음식 조리, 가습기 사용, 실내 화분, 빨래 등으로 인해 실내 상대 습도가 높아지는 경우에는 창호 유리면 및 창틀 주변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연환기 또는 환기 시스템을 작동하여 결로 현상을 예방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2~20층 복도에 소방관 진입창이 적용된 창호는 비상시 소방관 진입을 위해 유리를 파쇄합니다. 창에는 소방관 진입창 표시가 부착됩니다. •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되지 않는 같은 라인의 다른 층의 창호는 형태가 상이합니다. • 소방관 진입 표시는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빛반사, 야광 등의 재질로 제작되며, 크기, 부착 위치, 재질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됩니다. • 오피스텔 각 실 거실에 배연창이 적용되고, 배연창은 비상시 외에는 고정창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개폐를 위한 기계 장치가 부착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으며, 평상 시 개폐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창호 프레임과 벽체 내외부 마감과의 깊이는, 마감재(석재, 페인트 등)에 따라 다릅니다. • 건축법 시행령 51조에 의거 거실 1개소에 설치된 배연설비로 화재 시 배연창호가 자동으로 개폐되며 환기목적으로 사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배연설비의 색상 또는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설비 설치로 인해 창호 프레임에 타공이 될 수 있습니다. • 배연창 설비가 설치됨으로 인해 입주 후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배연창 설비의 임의 제거 및 변경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및 마감재	• 불박이 가구(신발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등)는 본 공사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는 본 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시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는 성능 향상 및 시공성 개선을 위해 일부 마감디테일 및 수납공간의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도어에 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흠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분양 사업장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시공 시 단위세대 발코니 내부에 결로방지를 위하여 일부 천장 및 벽체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거실 우물천장은 설비 환기배관 및 스프링클러 배관 설치로 인해 크기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됩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공사 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의 경우, 재료의 접합 연결부가 분양사업장과 일부 상이할 수 있고,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동등 이상의 다른 자재(타사자재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 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안방 포함) 가구는 침실 Size 및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설치 바랍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시공되는 마루자재는 스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는 목재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시 변형, 비틀림 등 우려가 있습니다. • 강마루의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인조석(현관디딤판, 화장대상판, 욕실, 주방상판 등)은 무늬와 색상, 줄눈나누기 간격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 시 연결부위가 발생(단위실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 미선택 시 냉장고가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 제품 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단, 일부 중국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KS기준 시험성적서가 없거나 제품 생산기준이 KS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타일 나누기(현관, 욕실 등 타일이 시공된 부위)는 분양사업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 창호 디자인(색상 포함), 프레임사이즈,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현장여건, 풍동실험 및 안전성에 따라 본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창호 계획에 있어 공간 활용도 향상을 위하여 위치 및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분양사업장 및 분양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위치 및 크기, 개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판은 별도의 물턱이 없으므로 사용 시 물튀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본공사 시 단위실 내 목문, ABS문의 힌지 및 손잡이, 손끼임이 발생하는 코너부위에 손끼임방지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미설치 시 해당 없습니다.) • 단위실 내 일반 가구 선반의 배치는 좌우 단위실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은 재료의 특성 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등의 마감재는 가공 및 생산방식에 따라 분양사업장과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포켓도어의 프레임, 손잡이, 하드웨어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발생이 생길 수 있으며, 타일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정고 및 실규격은 시공허용 범위 내 다소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 거실 아트월,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에는 걸레받이가 미시공 됩니다. • 단위실 내 거실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 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욕실 출입문(부부, 가족)은 본공사 시 PVC 계통(ABS) 도어로 시공되며,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은 외부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월패드외 위치는 거실 벽체에 설치 됩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샤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창호, 시트 패널 등의 고정을 위해 본공사시 Staple Tacker가 사용되며,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욕실장, 샤워부스, 시스템선반의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마감 표면재(벽지, 시트, LPM 등)는 제품 생산 시 미세한 색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석재류(인조석재 포함)는 자재 특성 상 색상, 무늬, 패턴 등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적용되는 타일은 시공 시 인접 타일과 줄눈 두께 상이 혹은 단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타일의 재료적 특성 상 각 장 별 색상 및 패턴의 차이(멀티 패턴 타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현관 및 욕실, 주방 등에 시공되는 바닥타일의 경우 사선방향 균열 및 파손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 분절시공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창호 상부의 커튼박스는 천장 속 단열마감을 위하여 커튼박스의 폭, 깊이,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루의 특성상 색상, 무늬, 패턴 차이와 웅이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하자가 아닙니다. • 욕실 내 샤워부스 및 욕조하부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 욕실 천정에 점검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정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므로 욕실 출입 시 문쪽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단위실 내 욕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자체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 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 욕실 거울 및 절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 시 욕실 및 발코니 천장의 마감재 나누기 및 점검구 개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각 실별 코킹 시공부 부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기계설비	• 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를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샤워부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 • 환기 디퓨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분양사업장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패스 시스템의 스마트폰 연동은 스마트폰 OS 정책에 따라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패스카드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주방에 설치되는 자동식 소화기는 사용 열원에 맞는 종류로 설치됩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비데 리모컨 설치위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설치 위치는 향후 변경 될 수 있으며, 입주시에는 리모컨을 미부착후 기본 제공하여 드리오니 입주자의 사용 편의성 및 선호위치에 부착하여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 주거생활(조리 및 빨래 등)으로 인한 실내습도 상승시 여름철 팬코일 장비 및 냉수배관 주변으로 결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개인 물품인 제습기 또는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습도관리에 유의 해야합니다. • 주방 하부장에는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씽크장 하부의 디자인이나 수납 용량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배수배관은 층하 배관으로 인접 실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실 내 급수급탕 분배기의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열교환기 가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구 위치나 개소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전열교환기가 실외기실에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은 적외선 감지기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분양사업장	분양사업장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분양사업장 등에 적용된 모든 마감자재는 시공 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및 각종 인쇄물, 분양사업장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실 내 설치된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분양사업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나 분양사업장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공급안내,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조감도, 사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 전시모형을 포함한 각종 홍보물의 가구 소품, 디스플레이,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기본형 마감재 / 가구형태 / 가전 / 평면형태 등에 대해서 반드시 별도 분양안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시공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양 상담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평면, 마감재 및 오피스텔 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 별도계약 품목(설치사항, 규격), 선택옵션품목, 분양사업장의 연출용 시공품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전자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분양사업장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출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 되지 않았고, 실제 시공 시 분양사업장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 및 홈페이지는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접근이 제한되거나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분양사업장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오피스텔모형 및 각종 인쇄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 공사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 분양사업장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나, 일부 내용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시된 마감재 및 설치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사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질 또는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건립 시 미관 및 성능향상 등을 위해 건축허가승인도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된 사항은 추후 분양사업장기준으로 건축허가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신고)처리 할 예정임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사업장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와 신제품의 개발시에 동질 및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플러스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사업장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감지기와 벽체에 설치된 경보기 등은 분양사업장 자체의 소방시설로서 본 공사 시 위치와 사양 등이 변경되며,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에어컨 역시 분양사업장 자체의 냉·난방 설비로서 본 공사 시 적용되는 품목이 아닙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생활 가구류(침대, 책상, 책장, 소파 등), 생활 가전류(세탁기, 건조기, 밥솥, TV, 기타 주방 및 침실 소형가전 등), 침장 및 커튼류, 그림 액자, 인테리어 소품 등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연출용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 대기전력차단장치, 온도 조절기, 일괄소등스위치, 디지털 도어록, 현관 도어폰, 단위실 분전반, 통신 단자함, 등의 제품 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타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각종 위생도기와 수전, 약세서리류, 바닥배수구, 각종 조절기와 조작버튼은 본 공사 시 설치 위치나 높이, 색상,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실의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류는 디자인, 사양, 개수, 설치위치 등이 건립 단위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은 법규에 의거해 거실 또는 침실, 복도 등의 노출된 장소에 설치될 수 있으며 입주 후 개인의 사정에 따른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사업장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의 온도조절기, 환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는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통신 단자함, 오피스텔 실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색상,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 설치된 CCTV는 분양사업장용으로 본 공사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분양사업장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분양사업장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분양사업장에 미건립된 타입의 경우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유사 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시 상담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에 대한 정보를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 분양사업장의 외부영상, CG, VR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분양사업장에 설치되는 아이템은 화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사업장 단위실 내 설치된 월패드 및 스마트스위치의 기능은 참고용으로 현장별로 기준이 상이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본 공사시 해당 기능은 구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의 설치 위치 및 설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조명기구, 월패드, 전기/통신분전함, 스위치/콘센트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디지털도어락, 소방설비류 등은 기능 및 디자인은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월패드,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온도/환기스위치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시로 설치되었으며, 본 공사 시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품목은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류는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건립되지 않은 단위실의 조명기구, 콘센트/스위치류, 통신수구, 전자식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등은 건립 단위실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월패드,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단위실간 설치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단위실의 경우 분양사업장보다 훨씬 이동되어 설치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은 분양사업장에서 확인 바랍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내부에 콘센트가 설치되는 경우, 해당 가구장 내 수납 간섭이 있을 수 있으며 전원선이 노출됩니다. 단위실 동체감지기는 2층, 3층, 최상층에 적용됩니다.

구분	내용
	• 단위실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됩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특화 조명기구의 외관 디자인 및 Spec, 설치수량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옵션 미선택 시 기본조명으로 설치되오니 분양사업장 내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 E/V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 할 수 있고, 오피스텔 옥탑층 시설물(의장용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설치에 따른 조망 및 빛의 산란 등으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 배기구 근처에는 발전기 정기점검 및 비상시 가동으로 인한 매연이 인근 단위실 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 된 단위실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관련제품, 단위실 분전함,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의 설치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홈네트워크 관련 제품의 경우, 본 시공시 설치 시점에 따라 일부 디자인 및 기능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위실 내 설치되는 액세서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및 기기(선풍통, 설비 및 전기 각종기기)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실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은 관련 법규가 정한 기준에 맞추어 노출 설치되며 안방, 침실 내 도어 후면 등에 설치 될 수 있습니다.(타입별로 설치되는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현관 신발장의 경우 단위실 분전반과 통신단자함 설치공간 확보를 위해 동호수에 따라 분양사업장과 설치방향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신발장 내부에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신발장 내부 사용면적이 감소하거나 가구내부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주보는 미러형 타입의 경우 전기기기(월패드, 단위실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위치가 간섭에 의하여 단위실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에 설치된 조명기구, 조명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환기컨트롤러, 환기디퓨저,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위치,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사업장 내에 시공된 단위실 조명기구 공사 중 본 공사 시 조도개선 및 자재생산업체 부도, 생산중단 시 동등(자재단가)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설치하였으며, 위치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 중 일부 홈네트워크 제어 기능은 단지 내에 고정 IP 회선이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 고정 IP는 3년간 무상서비스로 공급되며 그 이후에는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서비스는 무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이 필요하며, 입주지정기간 이후 3년간 무상서비스로 제공된 후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홈네트워크 연동기기(조명,난방,환기,인덕션열원차단 등) 외에 IoT 가전 연동제품(소비자가 별도구매)은 푸르지오 App에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및 가전사의 App 기능을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연계되는 이동통신사나 가전사는 각 사의 정책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으로 연동되는 홈넷 및 3rd Party 들의 하자보증기간은 각 기기별 관련 법규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혹은 가전사의 음성인식 스피커는 소비자가 별도로 구매하여야 합니다. • 푸르지오 App과 연계되는 이동통신사 App 서비스 이용 조건은 사용자와 통신사와의 계약내용에 준하며,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추후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사의 앱을 통해 IoT 가전 연동기능을 사용할 경우, 이동통신사의 정책 및 가전사의 정책변경에 따라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IoT 가전기기제어는 단위실 내에 무선인터넷 환경(Wifi)이 구축되어야 제어기능이 가능합니다.(소비자가 별도 구축) • IoT 가전은 이동통신사 별로 연동가능한 모델이 상이하니 통신사의 App을 통해 연동가능한 모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IoT 기능이 있는 생활가전제품을 입주자가 별도 구매, 설치 후 이용 가능 하며, SmartThings 앱에 제품등록 및 푸르지오 스마트홈 어플리케이션 연동 등 사전 등록과정이 필요합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홈 앱을 통해 연동가능한 삼성전자 생활가전 제품은 9종 가전(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에어드레서, 건조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Smart TV)이며, 모델에 따라서 이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공 기능도 당사 및 삼성전자의 운영 정책에 따라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위한 삼성 SmartThings 앱 사용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6.0이상 iOS 10.0 이상부터 지원(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6 이상부터 지원) 가능합니다. 빅스비 사용시, 안드로이드 7.0 누가 이상 iOS 10.3 이상부터 지원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삼성전자 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smarthings/), 빅스비 사용환경은 삼성홈페이지(www.samsung.com/sec/apps/bixby/)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삼성전자의 스마트 생활가전 연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맥내에 와이파이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소비자 별도 구축). 또한 삼성전자의 SmartThings 앱을 통한 단위실내의 각 종 홈넷 기기의 제어 서비스는 입주기간 종료 후부터 3년간 무상이나, 무상기간 이후 홈IoT 플랫폼 제공사 운영정책에 따라 유상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상 전환 시 해당 플랫폼 제공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 푸르지오 스마트 홈 App과 연계되는 제휴서비스 업체들은(주거서비스) 당사와의 계약기간 혹은 해당사의 정책 등에 의해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LG전자의 스마트 가전과 푸르지오 스마트홈 App과의 연동은 당 사의 개발 일정이나 해당 사의 정책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오피스텔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 후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건축허가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분양광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본 분양광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약관

- 본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오피스텔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4-0000400호	₩19,466,980,000원	분양광고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사업장의 주상복합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감리회사 및 금액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유원이앤에프(주)	서한컨설팅(주)
감리금액	3,099,137,800	617,353,350	577,000,000

■ 사업주체(분양사업자, 시공사 등) 명칭

구분	분양사업자 겸 시행수탁자(신탁업자)	시공사	시행위탁자	분양대행사
상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주)대우건설	대구동구복합개발1호 주식회사	(주)한아름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을지로 4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87, 3302호(범어동, 범어자이엘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69, 702호 내 703호(구미동, 로드랜드이지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10111-2137895	170111-0808355	111511-0045306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대한토지신탁신탁(주)(등록번호 : 서울0800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26층, 33층(삼성동 아셈타워)
- (인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2-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대지소유권 100% 확보, 잔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등기
- (분양대금관리자) 대한토지신탁(주)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분양광고 및 분양사업장에 게시하였습니다.

■ 분양사업장 위치 및 분양안내, 사이버 분양홍보관(홈페이지)



• 주소

- 분양사업장 :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778번지
- 현장 :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11-4번지 일원

• 홈페이지 : <https://www.prugio.com/hb/2025/venturevalley>

• 분양문의 : 1544-7780

※ 홈페이지 및 분양, 광고에 관한 문의사항은 상기 분양문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업장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분양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분양사업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